

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2. 건명 :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
일부개정 조례안
3. 안건요지 : 별첨
4. 검토의견 : 별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6년 11월 27일

행정자치위원회

전문위원 한봉전

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6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현행규정을 일부 개정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).
- 나. 예탁자금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기금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함(안 제4조).
- 라.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함(안 제5조).
- 마.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함(안 제6조).

3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·시행되

고 「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」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새 법령에 맞게 보완·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